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천하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9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9.

발의자 : 천하람 · 정성호 · 이준석

주호영 · 이개호 · 황운하

안규백 · 이주영 · 강준현

김교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.

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,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.

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-촬영제작-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, ‘3년 일몰제’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음.

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

상시키려는 것임(안 제25조의6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. · 2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